

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5노43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000(00군수)
접수년월일	2005. 12. 8.
판결선고일	2006. 3. 23.
원심재판 결과 등	벌금 200만원->피고인 항소
쟁점(피고인의 항소이유)	1.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1항의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적용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선고결과	항소기각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군수로서,

1. 2004. 10. 2.경 제12회 재경00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서 위 군민의 날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해 달라는 재경00군향우회 사무국장의 부탁을 받고, 그달 28.경 00군의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 2004. 12. 25.경

(1) ××회(구 평화민주당의 00군내 읍면 연락소장 역임자들의 친목단체), 민주당 00지역 당직자, 00군의회 의원 등의 식사모임에서 식비 196만원을 결제하고,

(2) 이어진 ××회 회원들과의 노래방 모임에서 술값 등 3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1항의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 직전의 00군수였던 A는 재경00군민의 날 행사에 홍어와 막걸리 등 현물만을 찬조하였을 뿐 현금은 찬조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홍어와 막걸리 등 현물과는 별도로 30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점, 당시 00군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 지역의 00군민 향우회에 물품 등을 찬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300만원은 위 예산이 아니라 국내여비 등 다른 항목의 예산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조성·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찬조금을 기부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양형 부당 여부

재경00군향우회의 회원은 30만명 정도이고, 그 중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5,000명 정도로서, 그들이 00군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식사 및 노래방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기부행위에 제공된 돈도 그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4. 3. 12. 개정되면서 기부행위 금지 기간을 없앤 것은, 선거일을 많이 앞둔 시점에서 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음성적으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품 제공행위를 막으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특히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직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차기 선거일이 많이 남은 시점에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불법성이 두드러지게 낮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되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등 일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